

특정감사

직무감찰 및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 【 제보건 관련 】

2015. 4.

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배경 및 목적	1
2. 감사대상 기관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 중점사항	1
II. 조사결과	2
III. 조치의견	3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이번 특정감사는 익명의 제보자(내부직원)로부터 『직원 복무규정 미준수 및 기관운영 부적정 등』에 대한 제보가 있어 관련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무감찰 및 해당기관의 기관운영(휴가 관련) 현황을 점검함

□ 제보내용

- 일 자: 2015.01.19.(월)
- 내 용:
 - 지사에서 점심이후에 개인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함
 - 직원들 바빠서 휴가도 못 쓰고 12월에 쓸려면 거의 노골적으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함

2. 감사대상

- ○○·○○지역본부 ○○지사 지사장 ○○○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: 2015.01.23.(금), 2015. 1.27.(화)~ 2015. 1.29.(목) / 4일간
* 추가 징후 포착 및 제보 대기기간: 2015. 2. 12.(목) ~ 2015. 3. 31.(화) / 48일간
- 감 사 반 : 감사실 ○○ ○○○ 외 1인

4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제보 내용 위주로 감찰 및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보내용의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는 관계로 “선(先) 조사 후(後)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체계”로 조사를 실시하였음.

- 근무기강 감찰
 - 근무시간 중 이석·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
 - 업무용 임차차량 사적 이용
 - 출·퇴근시간 준수, 출장 및 외출 후 귀소 등 기본적 복무사항
- 기관운영 감사
 - 소속 직원 연월차 휴가 승인 신청 및 승인 여부 등

II

조사결과

□ 탄원서 내용 조사결과

○ 점심시간 헬스장 이용 건

- 조사방법:
 - 관련 직원 밀착 감찰
 - 주변 헬스장(4곳) 방문조사
 - 대상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(2014년) 조사
 - 소속 직원 질문서 및 서무직원·지사장 문답
- 조사결과: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하였으나 혐의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였음

○ 소속직원 휴가 사용 제재건

- 조사방법:
 - 질문서: 소속 전(全) 직원
 - 문답서: 휴가 일부 미사용 직원·서무직원·지사장
 - 서면조사: 소속 전(全) 직원 휴가사용내역 조사
- 조사결과: 증빙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

-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조사 이후 추가적인 관련 징후 포착이나 추가 제보 등이 없어서 공사의 복무규정 등 기타 제 규정·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
- 따라서 본 건은 종결 조치하고자 하며 익명으로 접수되어 별도의 민원회신 조치는 생략하고자 함.